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7,628,010	17,628,840
일반회계	567,411,004	17,022,330
특별회계	20,217,006	606,510
기타특별회계	20,217,006	606,510
상수도특별회계	4,872,034	146,16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63,200	28,89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7,659	20,93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221,556	96,647
주차장특별회계	82,000	2,4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800	1,49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257,823	217,735
하수도특별회계	3,072,934	92,18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10,12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